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35
----------	-----

제출연월일 : 2019년 5월 24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활동 참여에 필요한 학부모교육 지원의 근거 마련으로 학부모교육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학부모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조례 제명 변경

나.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에 필요한 학부모교육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별첨 6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다. 협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입법예고(2019. 4. 25. ~ 5. 15.)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 3)

○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별첨 4)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별첨 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2조 및 제23조로 하고, 제19조, 제20조,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교육활동 지원 계획 수립) 교육감은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육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활동 지원 사업) 교육감은 학부모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부모 학교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 사업
2.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사업
3. 자녀교육 등을 위한 상담 사업

4. 그 밖에 학부모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21조(학부모지원센터 운영) 교육감은 제20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학부모교육활동 지원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중전의 제19조)제1항 중 “운영”을 “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사업 추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u>학부모회</u>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p>	<p>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u>학부모회</u> 설치·운영 및 <u>학부모교육</u> 지원 등에 관한 조례</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신설></p>	<p>제2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학부모교육</u>”이란 학부모의 <u>역할 수행과 교육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u></p>
<p>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① <u>서울특별시교육감</u>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의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① <u>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u> ----- -----.</p>
<p>② (생략)</p> <p><신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9조(<u>교육활동 지원 계획 수립</u>) <u>교육감은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육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신설></p>	<p>제20조(<u>교육활동 지원 사업</u>) <u>교육감은 학부모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p>

<신 설>

제19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0조 (생략)

1. 학부모 학교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 사업
2.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사업
3. 자녀교육 등을 위한 상담 사업
4. 그 밖에 학부모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21조(학부모지원센터 운영) 교육감은 제20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학부모교육활동 지원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재정지원 등) ① -----
----- 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사업 추진-----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활동 참여에 필요한 학부모교육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으로 이로 인한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주무관 우승곤 (02-3999-472)

【별첨 3】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제14조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해당 없음	

【별첨 4】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	행정6급	박동환
입안주관부서	참여협력담당관	통보일	2019. 5. 13.
관련조문	평가결과		조치사항
제2조~제3조 제19조~제22조	<p>중전 조례에서 학부모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학부모교육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 사업 및 추진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법령 기준 및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거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규정을 개정함</p> <p>⇒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u>“원안동의”</u> 함</p>		<u>“원안동의”</u>

【별첨 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19A서울교육008			
정책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참여협력담당관		
	담당자명	우승곤	전화번호	02-3999-472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정책안전기획관		
	담당자명	민경식	전화번호	02-399-9310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19년 05월 07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19년 05월 13일			
<p>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05월 13일</p>				

【별첨 6】

관계법규

■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